

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47 |
|----------|----|

제안연월일 : 2018. 10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7조(위탁관리)에 의거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(곰두리 광고)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함.

2. 위탁시설현황

- 위탁시설 :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『곰두리광고』
- 위치 :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2(송정리 2290-10)
- 규모 : 대지면적 1,902㎡, 건축면적(가·나동) 559.68㎡
- 현수탁자 : 사)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평창군지회(회장 오세화) *'88년~현재
- 운영예산('18년 기준) : 177,765천원(군비)

* 연도별 보조사업, 자체사업(군비) 지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.

3. 위탁개요

- 위탁기관 : 평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
- 위탁기간 : 2019. 01. 01. ~ 2023. 12. 31.(5년간)
- 위탁내용 :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
-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: '18. 11월
-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: '18. 12. 31일까지

4. 기대효과

-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의 위탁운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마련에 기여
-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내실있고,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

5. 관련자료

- 관계법령 1부. 끝.

관계법령 발취

□ 평창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

제7조(위탁관리) 제1항 군수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을 위탁관리(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“수탁자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 **제2항**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. **제3항**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 **제4항**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,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특히 필요시에는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제1항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제1항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**제1항** 충분조건 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**제2항** 필요조건 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